

물품공급계약서

성모성심유치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아이누리밀양창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물품공급과 구매를 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 절차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구매 및 개시일)

"갑"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을"을 통하여 구매한다. 다만, "갑"과 "을" 상호간의 사전협의에 의해 구매 및 납품 일정을 정하며, 변경하도록 한다.

제3조 (구매물품과 공급단가)

구매물품 품목은 "을"이 공급 가능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 공급 가능한 품목을 기재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며, 공급단가는 별도 협의에 의한다.

제4조 (물품대금의 지급)

- "갑"은 물품대금을 매월 말일 마감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별도 합의에 따라 결제 조건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을"은 물품대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갑"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상호계산)

"을"이 본 계약 또는 이외의 계약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상계적상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상계를 하는 경우 사전통지 또는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며 별도의 상계계약서는 작성치 아니하고 본 계약서를 상계계약서로 본다.

제6조 (발주 및 납품)

- "갑"은 "을"이 별도로 안내하는 품목별 발주 리드타임에 따라,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갑"이 발주한 물품을 "갑"이 지정된 장소("갑"의 영업장)에 배송하기로 한다.
- "갑"은 "을"이 제공하는 주문시스템을 숙지하고 능숙히 사용하여야 하며, 오발주로 인한 과실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7조 (교환 및 반품)

- "갑" 또는 "갑"의 지정인은 물품 입고 당일 9시까지 검수하여야 한다.
- "갑"은 검수 시 수량부족, 파손, 용해 및 변질 등 발주한 제품과 조건이 상이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물품 확인 후 즉시 "을"의 담당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식자재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중 발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을"은 교환 및 반품은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90분내 처리가 원칙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주변 현장 구입 및 직송 등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에게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한다.
- 전항의 교환 및 반품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손해배상의 책임)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 (기한의 이익 상실)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모든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도 본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의 상대방은 구두 또는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갑" 또는 "을"에 대한 회사정리,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경우
-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경매 등이 실행된 경우
-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영업의 폐지 등과 같이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계약기간은 2026년 03월 01일 ~ 2027년 02월 28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12조 (영업비밀 누설의 금지)

"갑"과 "을"은 상호 거래를 통하여 지득한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을'의 지원 및 '청탁금지법'의 준수)

-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성실히 준수할 것을 상호 확인한다.
- "을"은 "갑"에게 구매 품목의 샘플,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갑"에게 제공한 "을"의 지원은 "갑"의 임직원 등 개인에 귀속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14조 (전체조항)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교환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의사표시와 약정은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

본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상호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3월 03일

갑 상호 : 성모성심유치원
고유번호증번호 : 615-82-04269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911-12
대표자 : 김연옥 (인)

을 상호 : 아이누리 밀양창원
사업자등록번호 : 510-27-66184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약산로 10-2, 101호
대표자 : 김옥순 (인)